

## 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032-560-577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18. 6. 11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# I. 결정(변경)취지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미문의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사항임

#### II.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2. 용도지역·지구의 세분 (변경 없음)
3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)

가. 단독주택용지(A-2 용도) : 획지분할가능선 변경

기 정					변 경						
도면 번호	가 구 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고	도면 번호	가 구 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 적(㎡)					위치	면 적(㎡)	
A-2	77-1	4,438.9	1	292.0	5획지로 분할	A-2	77-1	4,438.9	1	292.0	5획지로 분할
			2	3,065.8					2	3,065.8	
			3-1	541.1					3-1	541.1	
			3-2	540.0					3-2	540.0	

※ 획지분할가능선 변경은 지형도면 참조

○ 단독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77-1	2	획지분할가능선 변경	적정규모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

5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6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7. 지형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) : 구보게재 생략